

#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총괄 시행세칙

## 제 1장 목적 및 적용범위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사단법인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를 운영하기 위하여 정관(제 47조 시행세칙 및 각 규칙제정)에 의거 각 위원회 및 사업부의 기본 방침과 세부 시행사항들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정관 변경)

정관을 변경할 경우,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제3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

회원 가입 후 승인이 된 후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임원 위촉 대상자가 되고 또한 회장 선출에 관한 투표권을 갖게 된다.

제4조 (회비) 연회비의 금액과 납부시기,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가입시 가입비는 70,000원, 연회비는 70,000원, 평생회원 회비는 1,000,000원이며, 납부시기는 당해 회계연도 이내로 한다.
2. 회비는 학회 지정 계좌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명예회원과 특별회원, 군복무 중인 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4. 회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논문사무국장은 재직기간과 재직 기간의 배수 기간 동안 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제5조 (상임이사 및 자문위원) 학회는 상임이사회와 자문위원을 둔다.

1. 상임이사회는 전임회장단에서 선임하며, 1년에 2회 회의를 개최한다.
2. 자문위원은 사회적 명망이 있고 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3. 상임이사와 자문위원은 회장의 회의 참석 요구에 응하며 회원작품전 출품, 학회 행사 등에 참여하고, 학회발전에 관하여 자문한다.

### 제6조 (회장의 선출 및 임기)

1. 정기총회에서 회장 후보를 심사 또는 추천하고, 피추천자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회원들의 투표, 또는 추대로 선출한다.
2. 회장의 임기는 3년 단임제로 한다.
3. 회장 임기 만료 1년 혹은 1년 반 전에 차기회장을 선임하여, 학회 업무를 숙지하도록 한다.
4. 차기 회장 후보자는 상임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입후보자로 등록된다. 입후보자는 총회에서 회원들이 선출한다.

### 제7조 [기구 및 임원]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상임이사 : 약간 명
3. 자문위원 : 약간 명
4. 감사 : 2명
5. 수석부회장 : 5명: 기획, 학술, 전시, 특별사업, 대외협력 등 5개 분야에 수석부회장직을 둔다.
6. 위원장: 6명: 논문편집, 작품편집, 연구윤리, 포상윤리, 규정심의, 선거관리
7.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 각 1명 / 논문편집사무국장 1명 / 사무간사 약간명
8. 부회장 : 5개 분야의 수석부회장 소속으로 각 2~4개의 분과 부회장직을 둔다.
9. 국내외 지부장: 약 10명: 국내외 지부는 해외 및 각 지역별 대학 및 산업체의 섭외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이사회에 반영하며, 논문투고 및 학술대회 논문발표 또는 학회 공모전 및 각종 전시회 지원 등에 협조하여 지역분포의 고른 안배로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10. 운영이사: 5개 사업부의 각 분과 소속으로 약간 명의 운영이사를 둔다.
11. 일반이사: 20명 내외의 이사를 두고, 각 사업부와 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활동하게 한다.  
각 이사는 국내외의 기관, 단체, 법인 등과의 교류지원과 프로젝트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 지원한다.
12. 기타 필요시 임원을 둘 수 있다.

### 제8조 (임원 대상자와 의무)

1. 임원 위촉은 회원 가입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회비 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2. 임원은 학회의 회의 참석 요구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임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 제9조(위원회와 사업부)

학회의 전문분야별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와 사업부를 설치하고, 회장은 각 1~2명의 수석부회장 및 위원장을 선임한다.

#### 1. 기획사업부

- 학회의 각종 대내외 자료조사와 분석을 통해 사업을 기획하고, 학회 홈페이지 업무, 홍보 업무, 편집과 출판, 교육 업무를 관장한다.
- 산하에 기획분과, 홍보분과, 출판분과, 교육분과를 두고, 각 1~2명의 부회장을 둔다.

#### 2. 학술사업부

- 학술사업부는 학술대회, 학술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학술 연구 업무를 관장한다.
- 산하에 학술논문분과, 학술대회분과, 연구분과를 두고, 각 1~2명의 부회장을 둔다.

#### 3. 전시사업부

- 전시사업부는 블루어워즈 공모전 및 국내외 전시 업무를 관장한다.

- 산하에 공모전분과, 전시분과, 국제교류분과를 두고, 각 1~2명의 부회장을 둔다.

#### 4. 특별사업부

- 특별사업부는 베스트브랜드 & 패키지디자인 어워즈 등의 사업을 관장한다.

- 산하에 베스트어워즈분과, 상품문화분과, 사업재경분과를 두고, 각 1~2명의 부회장을 둔다.

#### 5. 대외협력사업부

- 대외협력사업부는 학회의 대외경쟁력을 위한 국내외 섭외 유치, 봉사사업, 기업과 연계사업, 학회발전을 위한 자료,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 대외협력사업부는 유관기관, 대학, 산업체 섭외를 통하여 MOU를 체결 업무를 담당하며, 대외 프로젝트 등을 유치 관장한다.

- 산하에 대외협력분과, 기업분과 등을 두고, 각 1~2명의 부회장을 둔다.

6. 논문편집위원회는 한국연구재단의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 정리하며, 논문집의 편집 출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 산하에 부위원장과 사무국장, 영문초록 소위원회 위원을 둔다.

7. 작품편집위원회는 회원작품전, 베스트브랜드 & 패키지디자인어워즈 등의 작품 편집 업무를 관장한다.

8.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함에 있어 법령과 본 학회 규정 등 연구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9. 포상윤리위원회는 회원들에 대한 포상 업무를 관장한다.

10. 규정심의위원회는 학회의 제 규정 및 시행세칙에 관한 심의 업무를 관장하고, 학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해결에 협조한다.

#### 제10조 (위원회 및 사업부의 구성 및 임기)

1. 위원장과 부회장 등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위원장과 부회장, 위원, 이사 등의 임원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장과 부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1조 (위원회 사업 수행)

1. 각 위원회 및 사업부의 사업은 위원장의 책임 하에 수행하고, 사업시행 후 15일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 (기타)

1. 이 시행세칙은 우리 학회 회원에게 연구 또는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연구자에게 준용된다.

2.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2월 28일까지로 한다.

3. 제 증명서는 홈페이지에서 증명서신청서를 내려 받아 신청 작성 후 발급받을 수 있다.

회비 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4. 사무국장, 논문편집사무국장, 사무간사는 통신비, 여비, 식비로 소정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1. 본 시행세칙은 2016년 11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2. 본 시행세칙은 2018년 2월 정기총회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3. 본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정기총회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4. 본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정기총회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 사단법인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기획사업부 시행세칙

#### 제 1장 목적 및 적용범위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사단법인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를 운영하기 위하여 정관(제47조 시행세칙 및 각 규칙제정)에 의거 기획사업부의 기본 방침과 세부 시행사항들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사업부의 업무)

- 학회의 각종 대내외 자료조사와 분석을 통해 사업을 기획하고, 학회 홈페이지 업무, 홍보 업무, 편집과 출판, 교육 업무를 관장한다.
- 기관단체, 사업체, 국내외의 대학 등과 융합하여 각종 프로젝트를 유치한다.
- 산하에 기획분과, 홍보분과, 출판분과, 교육분과를 두고, 각 1~2명의 부회장을 둔다.

##### 제3조 (사업부의 구성 및 임기)

1.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등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운영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TF팀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과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4조 (사업 수행)

1. 사업부의 사업은 수석부회장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사무처와 협의하며, 사업시행 후 15일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1. 본 시행세칙은 2018년 2월 24일 정기총회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2. 본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정기총회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 사단법인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학술사업부 시행세칙

### 제 1장 목적 및 적용범위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사단법인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를 운영하기 위하여 정관(제47조 시행세칙 및 각 규칙제정)에 의거 학술사업부의 기본 방침과 세부 시행사항들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사업부의 업무)

- 학술사업부는 학술대회, 학술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학술 연구 업무를 관장한다.
- 기관단체, 사업체, 국내외대학 등과 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각종 프로젝트를 유치한다.
- 논문편집위원회와 협의하며, 사업 수행 시 시너지 효과를 갖도록 한다.
- 산하에 학술논문분과, 학술대회분과, 연구분과를 두고, 각 1~2명의 부회장을 둔다.

#### 제3조 (사업부의 구성 및 임기)

1.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등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운영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TF팀을 둘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4조 (사업 수행)

1. 사업부의 사업은 위원장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사무처와 협의하며, 사업시행 후 15일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1. 본 시행세칙은 2018년 2월 24일 정기총회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2. 본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정기총회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 사단법인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전시사업부 시행세칙

### 제 1장 목적 및 적용범위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사단법인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를 운영하기 위하여 정관(제47조 시행세칙 및 각 규칙제정)에 의거 전시사업부의 기본 방침과 세부 시행사항들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사업부의 업무)

- 전시사업부는 블루어워즈 국제공모전 및 국내외 전시 업무를 관장한다.
- 산하에 공모전분과, 전시분과, 국제교류분과를 두고, 각 1~2명의 부회장을 둔다.

## 제3조 (사업부의 구성 및 임기)

1.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등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운영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TF팀을 둘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4조 (사업 수행)

1. 사업부의 사업은 위원장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사무처와 협의하며, 사업시행 후 15일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1. 본 시행세칙은 2018년 2월 24일 정기총회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2. 본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정기총회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전시사업부 블루어워즈 상품문화디자인 국제공모전 시행세칙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문화디자인 분야의 창작활동 진흥과 교류의 확대 발전을 위한 블루어워즈 상품문화디자인 국제공모전(Blue Awards\_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product Culture and Design)의 작품출품 및 심사에 관한 시행세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운영과정 및 방법]

1. 회장은 운영위원장을 선임하고,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2. 회장은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공정한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모전 일정과 운영방법을 결정한다.
4. 운영위원장은 공모전 전체 운영과정에 책임의식을 갖고 진행하며, 정기총회 시에 운영결과를 발표한다.

## 제3조 [진행 과정 및 방법]

1. 운영위원회는 최소 2개월 이전에 출품신청 기간과 심사규정, 출품방법 등을 공지한다.
2. 1차 심사위원은 일정한 작품 수 이상 지도한 지도자 중 선정하며, 가급적 일선 지도자로 선정토

록 한다.

3. 2차 심사위원은 전국단위 및 국제적 단위로 보면서 지도 작품 수가 많은 지도자와 중앙단위의 공정한 심사위원들을 융합하여 작품 분야별, 학교 또는 지역별, 출품작품 수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우수한 작품 선정에 최선을 다한다.
4. 특히 대상은 심사위원장의 주제 하에 심사를 진행하되 전년도의 수상 분포 등을 참고하여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 제4조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1. 회장은 출품작품의 시상 작품 선정을 위하여 작품편집위원장을 포함, 운영위원회 및 내외부 전문심사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2. 출품작품의 심사는 '상품문화디자인'을 매개로 한 창작물로서 심사기준의 적합성으로 판정한다.
2. 심사위원장의 주제 하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진행한다.
3. '대상'은 심사위원 다수의 추천에 의해 선정한다.

#### 제5조 [수상 발표 및 공시]

1. 학회 홈페이지에 수상 발표를 공지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일정 기간의 공시 기간을 거친다.
2. 공시기간 동안 수상에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가린 후, 확정한다.
3. 단, 수상 확정 후라도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는 수상을 취소한다.

#### 부칙

1. 본 시행세칙은 2016년 11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2. 본 시행세칙은 2018년 2월 24일 정기총회 승인을 거쳐 개정 시행한다.
3. 본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정기총회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전시사업부 국내외전시 시행세칙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내외 전시작품전의 작품 출품, 전시발표 등에 관한 기본 내용으로 (사)한국문화상품디자인학회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문화·디자인 분야의 창작활동 진흥과 교류의 확대 발전을 위한 준칙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운영과정 및 방법]

1. 회장은 운영위원장을 선임하고,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작품전 일정과 운영방법을 결정한다.
3. 운영위원장은 작품전 전체 운영과정에 책임의식을 갖고 진행하며, 정기총회 시에 운영결과를 발표한다.

### 제3조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기준]

1. 회장은 출품작품의 시상 작품 선정을 위하여 작품편집위원장을 포함, 운영위원회 및 전문심사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2. 출품작품의 심사는 '상품문화디자인'을 매개로 한 창작물로서 심사기준의 적합성으로 판정한다.
3. 심사위원장의 주재 하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진행한다.
4. '최우수작품상'은 심사위원 다수의 추천에 의해 선정한다.

### 제4조 [진행 과정 및 방법]

1. 운영위원회는 최소 1개월 이전에 출품신청 기간과 심사규정, 출품방법 등을 공지한다.

### 제5조 [출품 자격]

전시작품전의 출품 및 전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이다.

1. 전시작품의 출품자는 (사)한국문화상품디자인학회의 정회원이어야 하며, 소정의 심사를 거쳐 1인 1작품 발표할 수 있다.
2. 전시작품전의 개최 취지에 부합하며 상품문화 분야의 학술 및 창작 활동 진흥과 교류에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자의 작품은 회장과 작품편집위원장의 승인 하에 출품 및 전시 발표할 수 있다.

### 제6조 [수상자 혜택]

작품전 '최우수작품상'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장을 수여하며, 수상자는 당해연도의 수상 후보가 된다.

### 부칙

1. 본 시행세칙은 2016년 11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2. 본 시행세칙은 2018년 2월 24일 정기총회 승인을 거쳐 개정 시행한다.
3. 본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정기총회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 사단법인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특별사업부 시행세칙

### 제 1장 목적 및 적용범위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사단법인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를 운영하기 위하여 정관(제47조 시행세칙 및 각 규칙제정)에 의거 특별사업부의 기본 방침과 세부 시행사항들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사업부의 업무)

- 특별사업부는 베스트브랜드 & 패키지디자인 어워즈 등의 사업을 관장한다.
- 특별사업부는 관련 기업과 브랜드를 대상으로 홍보 및 추천을 담당하고, 대외 프로젝트 등을 유치 관장한다.
- 산하에 베스트어워즈분과, 상품문화분과, 사업재정분과를 두고, 각 1~2명의 부회장을 둔다.

#### 제3조 (사업부의 구성 및 임기)

1.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등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운영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TF팀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4조 (사업 수행)

1. 사업부의 사업은 위원장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사무처와 협의하며, 사업시행 후 15일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1. 본 시행세칙은 2018년 2월 24일 정기총회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2. 본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정기총회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 사단법인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대외협력사업부 시행세칙

### 제 1장 목적 및 적용범위

####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사단법인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를 운영하기 위하여 정관(제

47조 시행세칙 및 각 규칙제정에 의거 대외협력사업부의 기본 방침과 세부 시행사항들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사업부의 업무)

- 대외협력사업부는 학회의 대외경쟁력을 위한 국내외 섭외 유치, 기업과 연계사업, 봉사사업, 학회발전을 위한 자료,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적극 관장한다.
- 대외협력사업부는 유관기관, 대학, 산업체 섭외를 통하여 MOU 체결 업무를 담당하며, 대외 프로젝트 등을 유치 관장한다.
- 산하에 대외협력분과, 기업분과를 두고, 각 1~2명의 부회장을 둔다.

#### 제3조 (사업부의 구성 및 임기)

1.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등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운영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TF팀을 둘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4조 (사업 수행)

1. 사업부의 사업은 위원장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사무처와 협의하며, 사업시행 후 15일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1. 본 시행세칙은 2018년 2월 24일 정기총회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
2. 본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정기총회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